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315
----------	-----

제출연월일 : 2005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타도에 소재하거나 노후 건물이 있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 그 재원으로 날로 심화되는 청사의 사무 및 주차 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등의 재산을 대체취득하고
- 충북과학대학의 복지환경 개선을 통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지원센터를 증축하며
- 도민의 문화욕구 및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재산을 취득한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당해 재산의 사용자에게 무상양여하려는 것임
-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천변에 위치한 무입목 임야를 입목 생육이 양호한 인접 사유림과의 교환과
-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오송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등 도정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코자 설립되는 지방공사의 경영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인 현물을 출자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재정법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 청사(별관) 부지 및 건물 매입 》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15
- 사업내역 : (현)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부지 및 건물매입
 - 토 지 : 1필지 3,308.6 m^2
 - 건 물 : 1동 2,477.5 m^2 (지하1층, 지상 4층)
- 사업기간 : 2005. 6 ~ 12
- 사 업 비 : 3,200백만원(도비 3,200)
 - ※ 재원확보 :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 등의 매각대금으로 충당

《 외청·사업소 부지 등 매입 》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216-18 등 9필지
- 사업내역 : 9,421 m^2 (세부내역 따로 붙임)
- 사업기간 : 2005. 6 ~ 12
- 사 업 비 : 550백만원(도비 550)
 - ※ 재원확보 :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 등의 매각대금으로 충당

《 충북과학대학 산학연지원센터 증축 》

- 위 치 :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85-20
- 사업내역 : 3,960.0 m^2
 - 창업보육센터, BIT산업기술지원센터 : 990.0 m^2
 - 기숙사 : 2,970.0 m^2
- 사업기간 : 2005 ~ 2006(2년간)
- 사 업 비 : 4,800백만원(도비 4,800)

□ 재산의 처분

《 국립청주박물관 부지 무상양여 》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 81-1번지 일원
- 재산내역 : 23,399.0m²(세부내역 따로 붙임)
- 양 수 자 : 국가(국립청주박물관)
- 사업기간 : 2005. 6 ~ 12
- 재산가액 : 2,273백만원
- ※ 양여조건 : 국립청주박물관이 타장소 이전시 충청북도에 반환

《 충북스포츠센터 무상양여 》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808-6
- 재산규모 : 11,125.0m²(2/8층, 2004년 신축)
- 양 수 자 : 청주시장
- 양여시기 : 2005. 6 ~ 12
- 재산가액 : 12,711백만원
- ※ 양여조건 : 양여받은 이후 10년 이내에 행정재산으로 사용
하지 않을 경우 충청북도에 반환

《 보존부적합 잡종재산 매각 》

- 위 치 : 충남 아산시 모종동 562-4 등 3개 지역
- 재산규모 : 토지 5,114m², 건물 195.8m²(세부내역 : 붙임)
- 매각시기 : 2005. 6 ~ 12
- 재산가액 : 2,422백만원
- ※ 매각대금은 본청 및 외청·사업소 부지 등 대체재산 취득재원
활용

□ 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임야 교환 》

- 교환시기 : 2005년
- 교환대상

(단위:m²,천원)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교 환 처 분	제천 봉양 명암	산9-1	임 야	12,546	47,674	충청북도
교 환 취 득	제천 봉양 명암	산22	임 야	27,372	43,795	산채건강마을 영농조합법인

※ 감정평가액으로 등가교환하되 차액은 금전 보충

- 교환사유
 - 하천변 무임목지 도유권을 인접 사유림과 교환, 산림자원 조성
 - 산촌마을 개발을 위한 산촌문화센터 건립 지원

《 공유재산 현물 출자 》

- 출자규모 : 토지 152필지 167,853.56m² 33,952,293천원

(단위:m², 천원)

구 분	필지수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계	152	167,853.56	33,952,293	
밀레니엄타운 부지	45	100,084.00	14,667,452	
가경·중평지구 연부용지	98	49,677.66	12,784,111	
부용산업단지 및 미분양택지	9	18,091.90	6,500,730	

※ 필지별 세부내역 : 따로 붙임

- 출자시기 : 가칭 『충북개발공사』 설립 등기 이전까지
- 출자방법 : 출자재산의 동시 처분 및 취득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재산취득	재산처분	교환취득	교환처분	출자취득· 출자처분
계	8,550,000 (도비 8,550,000)	17,407,850	43,795	47,674	33,952,293
청사(별관)부지 및 건물 매입	3,200,000 (도비 3,200,000)				
외청·사업소 부지 등 매입	550,000 (도비 550,000)				
충북과학대 산학연 지원센터 증축	4,800,000 (도비 4,800,000)				
국립청주박물관 부지 무상양여		2,273,668			
충북스포츠 센터 무상양여		12,711,410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2,422,772			
공유임야 교환			43,795	47,674	
가칭“충북개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33,952,293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 관리계획 반영재산 세부내역

- 가. 외청·사업소 부지 매입대상 재산
- 나. 국립청주박물관 부지 양여대상 재산
- 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대상 재산
- 라. 공유재산 현물출자 대상 재산

5. 관계법령 : 별첨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200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2 건	12,729.6㎡ (3,850평)	2,913,583 (2,913,583)				
	건물	2 건	6,437.5㎡ (1,947평)	5,636,417 (5,636,417)				
	기타							
1	토지	청주 상당 문화 15	3,308.6㎡ (1,001평)	2,363,583 (2,363,583)	2005	청사 사무 및 주차 공간 부족난 해소	매 입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건물	"	2,477.5㎡ (749평)	836,417 (836,417)	"	"	"	
	기타							
2	토지	청주 상당 영운 216-18 등 9필지	9,421.0㎡ (2,850평)	550,000 (550,000)	2005	외청 및 사업소 청사의 효율적 운영관리	매 입 (국유지 및 사유지)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옥천 옥천 금구 85-20	3,960.0㎡ (1,198평)	4,800,000 (4,800,000)	2005	충북과학대 산학연 지원센터 운영	증 축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2005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 (7-3)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양 여 사 유 및 법적근거	양 수 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1 건	23,399.0㎡ (7,078평)	2,273,668				
	건물	1 건	11,125.0㎡ (3,365평)	12,711,410				
	기타							
1	토지	청주 상당 명암 산 81-1 등 필지	23,399.0㎡ (7,078평)	2,273,668	2005	기부 목적에 충실한 이행 (지방재정법 제22조 제 2항)	국 가 립 (국립 청주박물관)	
	건물							
	기타							
2	토지							
	건물	청주 흥덕 사직 808-6	11,125.0㎡ (3,365평)	12,711,410	2005	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 (지방재정법 제22조 제 2항)	청주시장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2005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7-4)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매 각 사 유 및 법적근거	매각방법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1 건	5,114.0㎡ (1,547평)	2,407,312				
	건물	1 건	195.8㎡ (59평)	15,460				
	기타							
1	토지	충남 아산시 모종동 562-4 등 5필지	5,114.0㎡ (1,547평)	2,407,312	2005	대체재산 취득 재원 확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5조)	경쟁입찰· 수의계약	
	건물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7번지 등 1개소	195.8㎡ (59평)	15,460	2005	"	"	
	기타							
2	토지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2005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7-5)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주정가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및 법적근거	교 환 대 상 자	비고		
	구분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취득		1 건	27,3720 ^m (8,280 ^평)	43,795					
		처분		1 건	12,5460 ^m (3,795 ^평)	47,674					
	건물	취득									
		처분									
1	토지	취득	임야	제천 봉양 명암 산22	27,3720 ^m (8,280 ^평)	43,795	2005	산림자원 조성 및 산촌개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2 조)	산채건강미를 영농조합법인		
		처분	임야	제천 봉양 명암 산9-1	12,5460 ^m (3,795 ^평)	47,674	2005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2	토지	취득									
		처분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3	토지	취득									
		처분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2005년도 출자대상 재산목록 (7-6)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출 자 시 기	출자(취득) 사유 및 법적근거	출자대상 인	비고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취 득							
		처 분	1 건	167,853.5㎡ (50,775평)	33,952,293				
	건물	취 득							
		처 분							
	기타	취 득	1 건	6,790,458주	33,952,293				
		처 분							
1	토지	취 득							
		처 분	청주 상당 사천 90-1 등 152필지	167,853.5㎡ (50,775평)	33,952,293	2005	도 출자기관의 사업추진 지원 (지방재정법 제83조)	가칭'충북 개발공사'	
	건물	취 득							
		처 분							
	기타	취 득	1 건	6,790,458주	33,952,293	2005	도 출자기관의 사업추진 지원 (지방재정법 제83조)		
		처 분							
2	토지	취 득							
		처 분							
	건물	취 득							
		처 분							
	기타	취 득							
		처 분							

4-가. 외청·사업소 부지 등 매입대상 재산

(단위:m², 원)

일련 번호	재산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계			9,421	550,000,000	
1	청주 상당 영운	216-18	대 지	156	41,964,000	청주동부소방서
2	"	216-28	"	96	14,976,000	"
3	"	217-3	"	320	86,080,000	"
4	"	220-2	"	272	73,168,000	"
5	충주 용탄	1095	구 거	478	32,599,600	내수면연구소
6	충주 금능	188-1	답	3,200	188,160,000	가축위생연구소
7	충주 금능	187-2	과수원	2,154	89,175,600	북부지소
8	청원 가덕 한계	397-1	대 지	1,741	17,089,760	공무원교육원
9	진천 진천 성석	878	답	1,004	6,787,040	농산사업소

4-나. 청주국립박물관 양여대상 재산

(단위:m², 원)

일련 번호	재산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계			23,399	2,273,668,400	
1	청주 상당 명암	92-1	전	1,081	144,854,000	청 사 부 지
2	"	94-1	"	4,721	632,614,000	"
3	"	111-1	목 장	5,792	776,128,000	"
4	"	111-2	대 지	803	107,602,000	"
5	"	111-3	목 장	1,012	135,608,000	"
6	"	111-4	대 지	304	29,731,200	"
7	"	산81-1	임 야	6,512	21,815,200	"
8	"	산81-3	임 야	3,174	425,316,000	"

4-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대상 재산

□ 토 지

(단위:m², 원)

일련 번호	재산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재산가액	비 고
	계			5,114	2,407,312,000	
1	충남 아산 모종	562-4	대 지	1,927	1,092,609,000	
2	"	574-1	"	1,517	647,759,000	
3	"	577-5	"	734	361,128,000	
4	청주 흥덕 사직1	554-7	"	724	178,828,000	
5	충주 용산	50	"	212	126,988,000	

□ 건 물

(단위:m², 원)

일련 번호	재산 소재지	면 적	건 축 년 도	재 산 가 액	비 고
	계	195.8		15,460,000	
1	청주 흥덕 사직1 554-7	139.6	1980	13,900,000	조적조/ 슬라브
2	충주 용산 50	56.2	1972	1,560,000	목 조/ 시멘트와가

4-라. 공유재산 현물출자 대상재산 : 불입

관 계 법 령 발 취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 방 재 정 법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p>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8조(공유재산심의회)①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p> <p>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 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기부채납,무상양수,환지무상귀속,교환,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양여,교환,무상귀속,건물의 멸실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이 경우 예정 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p>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①조례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13호서식) 2 ~ 5호 생략